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06
----------	-------

발의연월일 : 2025. 8. 22.

발 의 자 : 추경호 · 김위상 · 이달희
김상훈 · 이현승 · 성일종
박성민 · 김정재 · 서지영
김기현 · 권성동 · 이종배
권영진 · 고동진 · 최은석
박성훈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이 일정한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의료관광 유치 지원 등을 위하여 계속하여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u>2025년 12월 31일</u> 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① ----- ----- ----- ----- ----- ----- ----- ----- ----- ----- ----- ----- ----- ----- ----- <u>2026년 12월 31일</u> ----- ----- ----- -----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